

담당부서 :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2133-7505
응급의료관리팀장	박영숙	2133-7536
담당자	윤경희	2133-7540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서울시, 자동제세동기 위치 표시하는 웹지도 시범 제작

- 서울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자동제세동기 위치를 표시하는 웹지도 시범제작
- 올해 12월 말까지 강북구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자동제세동기 위치 파악
- 주민 스스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능동적인 주민주도형’ 관리로 전환
- 전 자치구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3,057대에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관리자에게 기기사용법 및 응급처치교육
- 향후 시범사업 효과 검증해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 검토

- 서울시는 심장기능 및 호흡의 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처치장비인 자동제세동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지도화하는 ‘커뮤니티 매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동제세동기는 심장마비 등의 환자발생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응급 의료기기이다.

- 서울시에서는 매년 4,000여건 이상의 심정지가 발생하지만 생존율은 4.5%로 세계 주요도시 생존율인 15~40%에 보다 상당히 낮고, 심정지 생존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제세동기가 위치 안내 표지 누락, 관리자 부재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 커뮤니티 매핑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 이번 자동제세동기 위치 웹지도 제작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커뮤니티 매핑은 지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교통, 생활정보, 각종 시설물 등의 요소 등을 시민이 직접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이어서 교육, 참여 등의 효과가 있고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추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져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커뮤니티 매핑 방식은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꾸준히 시행되어 왔지만 자동제세동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모 당선 기관인 커뮤니티매핑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를 위해 지난 7월말 25개 자치구 공모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강북구를 선정하였으며, 8월 26일 일반시민, 사업참여기관, 자치구 및 시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실무회의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주민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해당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주변상황을 상세히 살펴 위치좌표와 정보를 웹지도 상에 입력함으로써 자동제세동기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뿐 아니라 자동제세동기 관리대책 수립 기초자료에도 활용된다.

□ 구축된 자동제세동기 자료는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웹 및 모바일을 통해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다른 데이터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관리할 예정이다.

□ 특히, 모든 지도 제작과정은 지역주민 참여하에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정보전달을 통해 수행해 나감으로써 능동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서울시는 이번 웹지도 시범제작 사업과 함께 전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3,057대에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관리자에게 기기사용법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제세동기 커뮤니티매핑 사업과도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 및 교육 효과 등이 검증되면 향후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주민 스스로 추진주체가 되어 참여함으로써 자동제세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심정지 생존을 향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별첨〉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관련 내용〉

□ 자동제세동기 정의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펄스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
-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AED)*=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13년 6월 기준)

○ 기관별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총 3,057대)

구분	계	법적 구비의 무기 관														기타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소방)	여객 항공기	공 항	객 차	선 박	철도 역사	여객 터미널	카지노 시설	경마 장	교도 소	종합 운동장	중앙행정 기관청사	시도 청사		공동 주택
대	3,057	84	127	0	15	0	0	46	5	3	1	3	17	23	3	443	2,287

○ 자치구별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구분	계	서초	노원	송파	중구	강남	강북	성동	마포	도봉	광진	용산	강동	구로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성북	은평	동대문	금천	관악	중랑	서대문	종로
계	3,057	401	274	206	191	187	159	159	141	111	108	102	96	92	91	90	87	84	74	74	68	58	55	51	50	48
의무대상	770	18	7	157	29	30	35	40	82	6	9	55	28	25	42	31	15	8	28	12	32	14	17	20	15	15
기타	2,287	383	267	49	162	157	124	119	59	105	99	47	68	67	49	59	72	76	46	62	36	44	38	31	35	33

□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동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대상 시설

세부근거	설치대상
<공공장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기본법 제35조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5호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법 제1조의2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수가 3천명이상인 대합실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한국마사회법 제4조	경마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경주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	소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중앙행정기관 청사 중 지정하는 청사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지정하는 청사